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교과서(주) 근로자가 제판실에서 근무중 “기관지천식”이 발생한 경우

(90-460호 90. 11. 19.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한○○

주소:은평구 구산동

원처분청:서울관악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상 동

주소: ”

소속:○○교과서 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8. 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교과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4. 13자 세브란스병원 발행 진단서상의 질병명 “기관지천식”에 대한 요양을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직업성 질병이라는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1969. 5. 9. 건강한 신체로 입사하여 1970. 9월경부터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제판실에서 근무중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 증상과 기침이 몹시 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0. 10. 29. 한○○)
2. 답변서(1990. 11. 1. 원처분청)
3. 요양신청서 사본(1990. 5. 4. 한○○)
4. 요양불승인 결정 결의서 사본(1990. 8. 7. 원처분청)
5. 심사결정서 사본(1990. 9. 20. 심사관 : 조○○)
6. 진단서 사본(1990. 4. 13. 세브란스병원)
7. 특진소견서 사본(1990. 8. 2. 세브란스병원)
8. 특진소견서 사본(1990. 7. 5. 고대구로병원)
9. 소견서 사본(1990. 8. 27. 노동부 자문의)
10.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교과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4. 13.자 세브란스병원 발병 진단서상의 질병명 “기관지천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세브란스병원 진단서상 “1984. 2. 15. 이후 본원 내과에서 처방한 약으로 계속 약물치료중이나 수시로 증상이 악화되어 10여회 입원경력과 수시로 응급실 가료받은바 있으며 현재 계속 약물 치료중인 발작원인이 확실하지 않음”의 소견 및 동 병원의 담당주치의 홍○○의 특진소견서상” 1) 1984. 12. 19. 이후 본원 내과에서 가료받았으며 1985. 7. 24. 이후 본인이 치료 및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담당하고 있음. 2) 스테로이드 의존성 기관지천식과 아스피린 유발성 기관지천식으로 증명되었음. 3) 환자의 직업과 관련해서 발병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크롬이 천식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여러차

레 약물을 끊는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환자상태가 천식약을 끊으면 증상발작이 바로 일어나므로 유발검사를 시행할수 없었음. 4) 직업성 천식의 일반적인 병태생리에 의하면 강산과 강알카리 등 가스(자극)에 의해서도 천식이 유발할수 있고 또 크롬, 니켈, 백금 등의 금속과 기타 수많은 화학물 및 유기물을 흡입함으로 천식이 발생할수 있고 이렇게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할 때를 직업성 천식이라고 함. 5) 한편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 환자는 자극성 가스와 강산 및 강알카리 등의 자극에 대해서(직장에서 흡입할 때) 천식증상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직업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인의 소견으로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움”의 소견과 고대구로병원 특진 소견서상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고 자가치료중인 자로 현재는 특이한 증상이 없으며 이학적 소견상 천명음도 없음”의 소견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1984. 12. 19부터 현재까지 직업성 기관지천식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직업성으로 진단할만한 소견을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 등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주)○○ 제화공이 작업중 졸도하여 상병명 “1) 대동맥판 역류소견(의심), 2) 고혈압성 망막증”이 발생한 경우

(90-518호 91. 1. 21.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고○○
 주소:부산시 서구 서대신 3동
 원처분청: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상 동
 주소: "

소속: 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7. 16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소속 제화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4. 6. 작업중 졸도하여 부산백병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1) 대동맥판 역류소견(의심), 2) 고혈압성 망막증”에 대한 요양을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작업환경이나 취급물질(유기용제 및 본드)에 의해 발생한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1986년 건강진단결과 정상으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본드로 인하여 혈압이 높아져 머리가 아프고 매스껌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여 덕성의원에서 진찰결과 본드로 인하여 혈압이 높아졌다는 소견이며 현재도 같은 증상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직업병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인(1990. 11. 12. 고○○)
2. 답변서(1990. 12. 6. 원처분청)

3. 심사결정서 사본(1990. 9. 20. 심사관 : 조○○)
4. 특별진찰결과 판정내용 통보공문 사본(1990. 7. 18. 원처분청)
5. 요양신청서 사본(1990. 6. 고○○)
6. 진단서 사본(1990. 5. 10. 부산위생병원)
7. 특진소견서 사본(1990. 7. 5. 부산백병원)
8. 진료소견서 사본(1990. 7. 24. 부산백병원)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1986. 6. 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 3월경부터 작업시 두통과 현기증, 구토증 등이 있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가 1990. 4. 6. 작업중 쓰러져 원처분청에 상담 및 요양을 신청하여 원처분청이 부산백병원에 특진을 의뢰한 결과 동 특진소견서상 “근무년도 : 1986~1990, 취급물질 : 유기용제(톨루엔, 한솔 등), 자각증상 : 두통, 오심, 현기증, 운동시 호흡곤란(최근 2년간), 1) 임상소견 내과 : 대동맥판 역류소견(의심), 안과 : 고혈압성 망막증(고혈압 : 1982년 이후), 2) 폐기능검사 : 제한성 장애, 흉부방사선 : 고혈압성 심장장해소견, 심전도검사 : 허혈성 심질환 소견, 기타 검사 : 정상범위 또는 특이소견 없음. 3) 최종소견 : 증상이 유기용제 취급시 나타날수 있는 증상과 동일하나 고혈압(210/120) 소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기용제에 의한 2차적 신체장해와 감별되지 않음(향후 고혈압관리 후 유기용제폭로에 따른 신체장해검사가 가능함) 단, 동 증상은 유기용제폭로로 지속될수 있으므로 작업부서 전환이 요망됨”의 소견과 동 병원의 치료소견서상 “두통, 현기증 등은 작업장에서 취급중인 toluene, thinner 등으로 인해 발생될수도 있으나 환자의 경우 심한 고혈압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감별이 불가능함. 현재로서는 직업성으로 인한 증상 발현으로 판정할수 없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발병의 원인이 작업환경 등의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